

「홍제재정비촉진지구」 홍제3재정비촉진구역 및
촉진계획 결정(변경) 주민공청회를 위한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52호(2010.12.16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02호(2013.03.28), 제2013-280호(2013.09.05), 제2013-327호(2013.10.04) 및 제2014-430호(2014.12.18)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홍제3재정비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주민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2월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가. 공청회의 개최 목적

- 「홍제재정비촉진지구」 홍제3재정비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

나.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

- 일 시 : 2016. 2. 23(화) 15:00
- 장 소 : 홍제1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

다.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

- 1)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지 구 명	유 형	위 치	면 적(㎡)		비고
			변경전	변경후	
홍제재정비촉진지구	중심지형	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	200,492	200,492	

2)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

구분	사업방식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총 계				200,492.0	-	200,492.0	
촉진 구역	소 계			56,718.0	증)7,769.2	64,487.2	
	도시환경 정비사업	홍제1구역	홍제동 298-9 일대	42,085.0	-	42,085.0	
		홍제2구역	홍제동 294-50 일대	3,069.0	-	3,069.0	
		홍제3구역	홍제동 306-2 일대	-	증)7,769.2	7,769.2	존치정비에서 변경 (일부 존치관리 포함)
		홍은1구역	홍은동 48-149 일대	11,564.0	-	11,564.0	
존치 정비	도시환경 정비사업	홍제3구역	홍제동 306-2 일대	6,506.0	감)6,506.0	-	촉진구역으로 변경
존치 관리	지구단위계획			137,268.0	감)1,263.2	136,004.8	

3) 변경사유

- 노후화된 홍제역, 홍제시장 주변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재정비촉진구역 확대 및 정형화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
- 존치관리구역(지구단위계획)인 총성교회 등을 편입하여 일체적인 도로 정비
- 대상지 북측은 기존 시장시설 경계로 구역을 정형화. 끝.